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으로 하고 “영아·유아, 병약자”를 “영아·유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2호 중 “아산화질소”를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마.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고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심의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특수영양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였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수입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 ----- ----- ----- -----.
1. <u>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u>	1. <u>특수영양식품(영아·유아</u> ----- ----- ----- ----- -----
<u><신 설></u>	2. <u>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u>

2. (생 략)	<u>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u> <u>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u> <u>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u> <u>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u> <u>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u> <u>된 식품을 말한다)</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